##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라 5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를 거쳐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됨(별도 해제 시까지)

- 다만,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본 조치를 따름

### 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  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# ② 적용 대상

-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\*, 학술행사,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
  - \*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
  - \*\*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# ③ **적용 기간**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 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
  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### ④ 추진내용 및 절차

- ※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- ① (중대본)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)

Ų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Û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에 **과태료 부과**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Д

- 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.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
-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 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,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

<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 >

## 이용자 수칙 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\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마스크 착용 \*\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\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\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- 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시자 참석자 등 모임·행시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 -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# <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li>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</li> <li>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</li> <li>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- 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 운영자 종시자 참석자 등 모임·행시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 -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#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-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-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③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 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<u>집합 금지 행정조치</u> 실시
  -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<u>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</u>

##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### □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  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**2**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점관리시설 9종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
  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 ③ **적용 기간**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 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-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- 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o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  - 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Ŋ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Л
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김염병예방법 제83초)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  - 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-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 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핵심 방역지침**을 모두 준수(참고1)
  - \* 다만, 유흥주점·콜라텍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수칙 중 '시간제 운영'은 지자체별로 선택적 적용 가능

-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  - **☞ 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 →**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**집합금지** 또는 **시설 운영 중단** 등 조치
  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    - 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  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  -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 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
    - \* 다만, 식당·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
  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집합금지** 또는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명령** 
  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  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1

#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■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	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사용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
단란주점	및 물건  N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 1명) 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(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)  *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	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O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■ 방역관리자 지정 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■ 21시 이후 운영 중단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노래연습장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수기명부 작성  ■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■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마스크 착용 ■시설 내 음식(물-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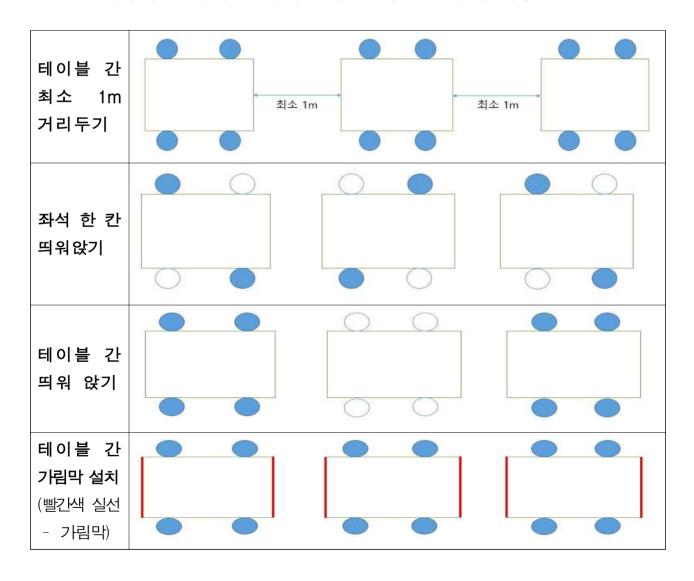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■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	
	■ 방역관리자 지정	
	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	
	■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	
	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'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
	■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
실내 스탠딩 공연장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■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■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■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 ■방역관리자 지정  ■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 ■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■시설 내 음식(물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■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-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50㎡ 이상)	■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제외  ■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■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 ■ 방역관리자 지정 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 ■ 에를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아(가리막 등 설치중하나는 반드시 준수    목계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임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임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임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1위 1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1위 1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 ■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	■ 전자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## 참고2 │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 관련 FAQ

## Q1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, ① 좌석 한 칸 띄 워 앉기,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 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
- 여기에서 '테이블'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 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, 테이블 및 이용인 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



## Q2.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/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

- 칸막이·가림막은 **높이가 70cm 이상,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**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
- 또한, 의무사항은 아니나 **테이블 가운데 칸막이·가림막**을 설치하는 경우 **감염 차다 효과**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
- Q3.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, 일부 공간은 좌석/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?
-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
- 예를 들어, 룸(room)과 홀(hall)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,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

## Q4. 식당·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?

-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
- 다만,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 간 후 12월 7일부터 실시함

##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### □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  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# 2 적용 대상

○ (대상) 일반관리시설 14종

#### < 일반관리시설 14종 >

-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목욕장업 ▲ 공연장 ▲ 영화관 ▲ PC방 ▲ 오락실·멀티방
- ▲실내체육시설 ▲학원(교습소 포함) ▲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직업훈련기관
- ▲놀이공원·워터피크 ▲아·미용업 ▲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² 이상)
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**적용 기간**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 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-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- 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o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  - 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Ų

② (지자체) 관내 **시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 $\sqrt{}$ 
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김염병예방법 제83초)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  - 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-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 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<u>방역지</u> <u>침을 모두 준수(참고1)</u>

-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  - **☞ 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 →**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**집합금지** 또는 **시설 운영 중단** 등 조치
  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    - 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  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  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 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
  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집합금지** 또는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명령** 
  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  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

## 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# □ 실내체육시설

## 이용자 수칙 관리자·운영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출입자 명부 관리 \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\*\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m²당 1명) \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

## □ 영화관·공연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●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 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●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►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►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 □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<ul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 <li>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</li> </ul>	

□ 학원(독서실 제외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이·미용업

## 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# □ 독서실·스터디카페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
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	
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
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	
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
▶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
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

## □ 놀이공원·워터파크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> <li>출입자 명부 관리</li> <li>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	►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► 마스크 착용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
<ul><li>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</li></ul>	
▶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

- 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- □ **상점·마트·백화점**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 m²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	▶ 마스크 착용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
►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	
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

##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8852(2020.11.4.)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

## □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  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종교시설
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# ③ **적용 기간**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 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-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.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o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  - \* 공포(9.29) 3개월 후인 12.30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Û

② (지자체) 관내 **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 $\Omega$ 
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김염병예방법 제83조)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  - 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-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 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<u>핵심</u> <u>방역지침을 모두 준수(참고1)</u>
-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  -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  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<u>추가 행정조치</u> 실시

- 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집합금지** 또는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명령** 
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<u>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</u>

## 참고

#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	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
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<sup>*</sup> 금지 (숙박행사 금지)	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 금지)
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	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
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
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	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■ 마스크 착용
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	
■ 방역관리자 지정	

- 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 -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 □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  - \*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- (대상)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  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적용 기간

- 2020년 11월 19일(목) 0시 ~ 12월 2일(수) 24시
 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-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-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o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  - \* 공포(9,29) 3개월 후인 12,30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Ţ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,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 $\Omega$ 

- 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김염병예방법 제83조)
- 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\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  - \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- 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-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 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<u>방역지</u> 침을 모두 준수(참고1)
-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  - **△ 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 →**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**집합금지** 또는 **시설 운영 중단** 등 조치
  - 관내 사업장별 **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** 및 <u>추가 행정조치</u> 실시
    - 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집합금지** 또는 **3개월 이내**의 **운영 중단 명령** 
  - \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

##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#### □ 콜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
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	▶ 마스크 착용
<ul>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<li>▶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</ul>	
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	
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	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 □ 유통물류센터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><li>►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</ul>	▶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
▶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	▶ 마스크 착용
▶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	
▶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	
▶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	
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	